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9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윤준병 · 임호선 · 박용갑
문대림 · 주철현 · 김교홍
서삼석 · 송옥주 · 이병진
조승환 · 안호영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 및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 ④ (생략)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 ----- ----- ----- . <단서 삭제>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략) <신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 및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